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212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6일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(주)비바리퍼블리카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3.6.13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◦ 데이터 판매 및 중개

-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를 개인 CB사에 제공하여 이를 활용하
여 개인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관련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의2제6항제4호, 동법 시행
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,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